

의안번호	제 66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4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임동현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지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원자율지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19호

(2021. 2. 22. ~ 2021. 2. 26.)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학원자율지도위원회)**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학원자율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③ 교육감은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관 계 법 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2. 3., 2020. 5. 26.>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 됨.